

第111回(臨時會)

서울特別市鐘路區議會 本會議會議錄

第2號

서울特別市鐘路區議會事務局

日 時 2001年 6月 13日(水) 11時00分

議事日程(第2次 本會議)

1. 서울特別市鐘路區兒童委員協議會條例改正條例(案)
2. 서울特別市鐘路區共同住宅의管理와관련된分爭調整에관한條例(案)
3. 都市計劃施設(旅客自動車停留場)·用度地域變更決定(案)에 대한 意見聽取의 件
4. 2001年度 第1回 追加更正豫算(案)

附議된案件

1. 서울特別市鐘路區兒童委員協議會條例改正條例(案)(鐘路區廳長 提出) 1面
2. 서울特別市鐘路區共同住宅의管理와관련된分爭調整에관한條例(案)(鐘路區廳長 提出) 1面
3. 都市計劃施設(旅客自動車停留場)·用度地域變更決定에 대한 意見聽取의 件(鐘路區廳長 提出) 1面
4. 2001年度 第1回 追加更正豫算(案)(鐘路區廳長 提出) 4面

(11時00分 開議)

○議長 金以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 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의 회의 진행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 조례(안)과 의견청취는 일괄 상정하여 각 위원회 별로 심사 보고를 받고 안건별로 심의를 한 후에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위원장 심사 결과보고를 받은 후에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特別市鐘路區兒童委員協議會條例改正條例(案)(鐘路區廳長 提出)
2. 서울特別市鐘路區共同住宅의管理와관련된分爭調整에관한條例(案)(鐘路區廳長 提出)
3. 都市計劃施設(旅客自動車停留場)·用度地域變更決定(案)에 대한 意見聽取의 件(鐘路區廳長 提出)

(11時02分)

○議長 金以煥 의사일정 제1항 서울特別市鐘路

區兒童委員協議會條例改正條例(案), 의사일정 제2항 서울特別市鐘路區共同住宅의管理와관련된分爭調整에관한條例(案), 의사일정 제3항 都市計劃施設(旅客自動車停留場)·用度地域變更決定(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市民行政委員會 李東奎 委員長!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市民行政委員長 李東奎 市民行政委員會 委員長 李東奎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하여 많은 수고를 하고 계시는 金以煥 議長님! 金正大 副議長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과 盧張鐸 副區廳長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일찍이 찾아온 무더위를 맞이하여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모쪼록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의원 여러분과 이 자리에 참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가정에도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면서 금번 임시회 기간 중에 본 위원회가 심사한 서울特別市鐘路區兒童委員協議會條例改正條例(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시·도 등 광역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던 아동위원회에 관한 사항이 시·군·구 조례로 정하도록 아동복지법이 개정됨에 따라 아동복지에 관한 업무권한 주체가 서울시장에서 자치구청장에게로 이전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시에서는 서울특별시아동위원정수등에관한조례를 2000년 10월 25일자로 폐지하였고, 우리 구에서도 상위법에 맞도록 조례 명칭 및 조문을 정비하고 아동위원회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의 명칭을 당초 「서울특별시종로구아동위원협의회조례」에서 「서울특별시종로구아동위원운영에관한조례」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2조에서는 위원의 임무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위원의 정수를 동 단위 2명으로 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위원의 위촉에 있어서 당해 지역사회의 실정에 밝고 아동복지에 열의가 있는 자 및 아동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위촉하도록 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아동위원협의회를 구성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심사 결과 (안) 제2조의 위원의 임무, (안) 제3조의 위원의 정수, (안) 제4조의 위원의 위촉 등은 아동위원 운영에 관하여 반드시 필요한 사항으로서 이를 규정한 서울특별시 아동위원정수등에관한조례가 폐지됨에 따라 우리 구의 조례로서 정하려는 것이며, (안) 제5조의 위원의 임기를 종전 3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는 것은 위촉기간의 단축으로 인하여 집행부에서는 임명 절차상 번거로움이 예상되고 위원들에게는 짧은 기간으로 인하여 위원 활동이 다소 위축될 수 있다는 단점이 있으나 집행부에서 2년으로 단축하여 조례 개정을 요구한 것은 이를 감수하겠다는 의사표시로 볼 수 있고, 또한 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단축한다 하여도 연임이 가능하기 때문에 적임자는 계속 유입시킬 수 있는 반면 비적임자는 조기 퇴출시키고 아동복지에 관심이 많은 전문 인사를 조기에 영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이를 수용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었으며, 기타 조례

명칭의 변경 및 목적, 협의회 구성과 기능, 회의수당 등의 조문정비 및 자구수정은 상위법령의 개정으로 아동복지 업무가 자치구의 고유업무로 법제화됨에 따라 우리 구 실정과 현실에 맞도록 문안을 정비한 것으로서 적법하다고 사료되었으나, 부칙 ②의 경과조치는 조례 개정이 된 이후 새로운 아동위원을 위촉할 때까지 아동복지 업무의 계속성을 유지하고 행정공백을 방지하기 위하여 기존 아동위원회에 아동위원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하지 않도록 두는 일반적 경과규정이거나, 기존 아동위원이 금년 5월말로 임기가 종료되었고 현재 집행부에서 새로운 아동위원을 구성하려는 단계에 있으며, 또한 아동복지에 관한 업무가 자치구의 고유업무가 됨에 따라 위원 활동을 활성화하는 등 내실을 다지기 위한 계획을 준비 중에 있으므로 본 위원회에서 새로이 구성된 아동위원이 새로운 마음으로 출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부칙 ②의 경과조치인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아동위원은 이 조례에 의한 아동위원으로 본다」를 삭제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본 위원회가 제출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參照)

서울特別市鐘路區鐘路區兒童委員協議會條例改正條例(案) 審査報告書

(市民行政委員會)

(이상 1건 附錄에 실음)

○議長 金以煥 李東奎 市民行政委員長!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財務建設委員會 金福同 委員長!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財務建設委員長 金福同 財務建設委員會 委員長 金福同입니다. 초여름의 길목에서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金以煥 議長님과 金正大 副議長님! 선배·동

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庶張鏞 副區廳長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하시는 모든 일들이 뜻대로 이루어지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면서 이번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종로구공동주택의관리와관련된 분쟁조정예관한조례(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대통령령인 공동주택관리령에서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된 분쟁의 조정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자치단체별로 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운영하도록 '99년 10월 30일에 법이 개정됨에 따라 제정하는 사안으로 그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 조정위원회 구성은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상 2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구의원, 판·검사, 회계사, 세무사 등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로 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은 위원이 호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원회의 권능은 공동주택의 경비, 청소, 쓰레기 수거 및 관리비 납부 등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된 분쟁에 대하여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내부적인 분쟁조정이 불가능한 사안에 대하여 구청장이 감독적 조정권을 행사함에 있어 심사조정 자문을 본 위원회가 수행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본 위원회에서 분쟁조정이 필요한 경우는 구청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분쟁사안에 대한 조사나 확인 등을 요구하거나 자료제출의 협조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심사 조정의 절차는 심사위원회의 조정안을 쌍방에게 통보하여 이를 수락할 경우 합의가 성립하는 것으로 하고 있으며 이 조정위원회 조정절차가 재판의 전심절차로는 규정되지 않은 사항입니다.

심사 결과 (안) 제10조제2항의 조정통지를 받은 당사자가 15일 이내에 회신하도록 한 규정의 15일간의 기간에 대하여 20일 이내로 회신기간을 늘려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이 같은 수정안은 조정안의 검토에 법률적 자문 등 충분한 검토기간의 부여가 필요하고, 또 행정절차법 규정은 행정예고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20일 이상의 검토기간을 부여하도록 강제하고 있어 수정 의결하였습니

다. 또 (안) 제12조의 조정 신청에 필요한 비용은 신청자가 부담한다는 규정 중에 '분담'을 '부담'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이는 수익자 부담 원칙에 의거 신청자가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분담으로 규정하였을 경우 일부만 부담하는 것으로 오해의 소지가 있어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시설·용도지역 변경결정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관내 평창동 148번지 1호 외 10필지, 면적 7,736㎡의 도시계획시설(여객자동차정류장)의 해제의 건입니다. 본 지역은 '77년 2월 28일 건설부고시 제77호 및 '79년 6월 26일 서울시고시 제278호로 각각 노외주차장 및 여객자동차 정류장으로 결정되었으며, '81년 5월 해당 토지소유자와 유성운수가 임대계약 체결 후 노선버스 135번의 차고지로 사용해 왔으며, '86년 6월 임대계약이 만료되어 차고지 사용이 해지되었으나 유성운수가 계속 점유사용하자 토지소유자의 소송제기에 따라 '88년 11월 명도승소 판결 후 현재까지 사용하지 않고 있으며, 그 후 '90년 4월부터 토지소유자로부터 도시계획시설(여객자동차정류장) 해제 민원과 소송제기 등이 잇따라 제기되어 종로구 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수차에 걸친 심의 결과 유성운수의 대체차고지 미확보 등으로 해제가 불가하다는 결론을 내렸으며, 2000년 10월 해제민원이 재접수되어 검토 결과 유성운수 측에서 은평구 수색동 253번지 25호 소재 서울시 은평권역 공영차고지 내에 임대기간 3년, 주차대수 60대로 사용계약을 체결하여 사용 중에 있어 대체차고지를 확보하였으므로 정류장 부지로 확보해 둘 필요성이 소멸되어서 총 11필지 7,736㎡ 중 현재 자연경관지구에 해당하는 2필지 843㎡는 자연경관지구 관리지침에 의거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조정되고, 나머지 9필지 6,893㎡는 현재 최고고도지구로 지정되어 있어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를 조정하는 것입니다.

심사 결과 용도지역을 조정하는 것은 타당하다

고 사료되었으나 관련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주민 의사가 바르게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할 것을 촉구하면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이미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본 위원회가 제출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參照)

서울特別市鐘路區共同住宅의管理와관련된分爭調整에관한條例(案) 審査報告書
都市計劃施設(旅客自動車停留場)·用度地域變更決定(案)에 대한 意見聽取의 件 結果報告書
(財務建設委員會)
(이상 2건 附錄에 실음)

○議長 金以煥 金福同 財務建設委員長!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일괄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議員 있음)

질의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은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議員 있음)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特別市鐘路區兒童委員協議會條例改正條例(案)은 시민행정위원장이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議員 있음)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特別市鐘路區共同住宅의管理와관련된分爭調整에관한條例(案)은 재무건설위원장이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議員 있음)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都市計劃施設(旅客自動車停留

場)·用度地域變更決定(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은 재무건설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議員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01年度 第1回 追加更正豫算(案)(鐘路區廳長 提出)

(11時20分)

○議長 金以煥 의사일정 제4항 2001年度 第1回追加更正豫算(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追加更正豫算特別委員會 丁炳煥 委員長!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追加更正豫算特別委員長 丁炳煥 안녕하십니까? 追加更正豫算特別委員會 委員長 丁炳煥입니다. 존경하는 金以煥 議長님을 비롯한 金正大 副議長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盧張鐸 副區廳長님과 관계공무원에게도 이 자리를 빌어 그간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지역언론사 여러분에게도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의 편성사유는 건전재정을 추구하면서 예산절감 추진 및 긴축재정을 운영한 결과에 따라 순세계잉여금 및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과 시설관리공단 위탁사업 수입 증가에 따른 재원이 발생하여 기이 확정된 예산에 추가로 세입과 세출을 편성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편성된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증가된 금액은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1,199억 2,400만원보다 6.5%가 증가한 1,276억 9,6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354억 4,100만원보다 8.2%가 감소한 325억 2,700만원입니다. 세출부분에서는 경상비로 23건에 29억 3,500만원, 투자사업비로 42건에 48억 3,600만원이며, 사업비 변동이 없이 사업구간만을 변경하는 도로개설공사의 경정 1건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보고 드리면 일반회계 경상경비는 환경미화원 인건비 인상분 13억 9,600만원, 수도권매립지 반입수수료 3억 5,000만원, 유아복지법정보조사업비 등 기타 3억 9,600만원 등 총 29

억 3,500만원으로서 주로 법정경비 위주로 편성되었습니다. 투자사업비로서는 종로5·6가동청사 신축공사 부족분 9억원, 교남동청사 신축공사 부족분 7억 2,000만원, 부암동청사 증축공사 등 기타 15억 6,600만원 등 총 48억 3,600만원을 배분하여 계속사업의 마무리와 주민편익사업 등 투자비에 중점을 두어 편성되었습니다. 도로개설공사 변경에 따른 경정예산 내역은 승인동 411~431간을 승인동 411~324간 도로개설공사비를 경정하는 것으로 사업비는 변경이 없이 경정함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로 당초예산에 214억 3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2000년도 결산 결과 184억 9,100만원으로 29억 1,100만원이 감소됨에 따라 삭감 편성된 것입니다.

다음은 간주처리 편성 결과입니다. 국가 또는 서울시로부터 내시되어 간주처리한 예산은 총 34억 8,200만원이며, 이중 일반회계는 27억 5,700만원으로 조정교부금이 11억 5,900만원, 보조금이 9억 9,800원, 교부세가 6억원이며, 특별회계 예산은 총 7억 2,400만원으로 전액 보조금입니다.

이번에 제출한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면 각 상임위원회에서 소관 부서별로 심도있는 예비심사를 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에 대해 본 위원회에서는 최대한 존중하면서 추가로 편성된 세출부분에 대한 내용들을 하나하나 매우 심도있게 장시간 심사를 하면서 다음과 같이 삭감 및 증액토록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삭감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교남동청사 신축 공사비 7억 2,000만원은 2001년도 본예산 사업 중 당초 재원 부족으로 축소 편성된 동청사 신축 등 계속투자사업비로서 부족한 재원을 요구하는 금액이 계상되었다고 하나 이번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 중 가장 논란의 대상이 되었고 장시간 매우 심도있게 다룬 사항으로 당초 동청사 건립 계획에 없던 지하 수영장 설치에 따른 사업예산안에 대하여는 현재 서부지역인 사직동 문화복지센터가 건립추진 중에 있고 동부지역 구민회관 및 구민생활관의 셔틀버스가 이용주민을 위해 우리 구 관내 전 지역

을 운행 중에 있으며, 또한 각 동의 주민문화복지센터가 운영 중에 있으나 수영장이 없는 점을 고려하는 등 모든 상황에 비추어 볼 때에 형평성에도 어긋나는 사안으로 사료되어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하수도 준설기 구매 편성에 있어서는 장비의 운영, 소요 적정대수 등을 감안하여 8,400만원 중 4,200만원을 삭감하는 등 총 7억 9,100만원을 삭감 조치하였습니다.

한편, 삭감한 금액에 대해서는 관내 어린이집 난방보수공사비로 2,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평창동 산 6-420 일대 산림보호 펜스 설치비로 3,000만원과 지난 6월 7일 집행부 실무부서의 주관으로 의원님들이 우리 구 쓰레기처리시설 시찰 시 청소차량의 차고지가 중랑천변의 성동구 송정동에 있어 관계 종사자의 출·퇴근시 대중교통 이용에 불편이 많아 대민청소서비스를 신속하게 대처하는 데 불편하다는 건의사항에 따라 환경미화원들의 복지증진 및 차고지에서 종로관내 청소작업 현장까지의 출·퇴근 편의를 위한 승합차량 구입비로 1,700만원을

증액하는 등 총 7,100만원을 주민편익 증진과 자체사업 등에 증액토록 의결하였으며, 심의 과정에서 타당성 여부로 논란의 대상이 되었던 교남동 신축청사 변경에 따른 사업비로 편성된 금액과 나머지 금액은 전액 지방재정법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구민회관 건립에 따른 지방채 발행의 원리금에 상환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같은 법 제16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재정을 계획성있게 운용하기 위하여 중·장기 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고, 중기재정계획에 반영된 사업을 우선하여 편성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금번 추경에 반영된 10건 중 8건이 중기재정계획에 미반영된 사업이 편성된 것에 대해 중·장기 재정계획의 실효성 확보 차원에서 중기재정계획에 반영된 사업을 우선 편성하고, 다음에 긴급을 요하는 사업을 반영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소수의견이 있었고 아울러 지방자치법 제121조제2항의 증액부분에 대한 동의 여부 의견청취는 실무국장의 불참으로 할 수 없었음을 보고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가 제출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參照)

2001年度 第1回 追加更正豫算(案) 審査報告書
(追加更正豫算特別委員會)
(이상 1건 附錄에 실음)

○議長 金以煥 追加更正豫算特別委員會 丁炳煥委員長! 수고하셨습니다. 추가경정예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안)에 대해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議員 있음)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議員 있음)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증액 부분에 대하여 집행기관장의 동의를 있어야 하므로 동의 여부를 묻겠습니다. 구청장님! 나오셔서 동의 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副區廳長 盧張鐸 副區廳長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1조제1항에 의거해서 鄭興鎭 區廳長님을 대리해서 동의 여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편성하지 않았지만 의회에서 증액 요청하신 승인1동 조은어린이집 난방공사비 2,400만원, 그리고 청소차량 기사 출퇴근 차량 구입비 1,700만원, 그리고 평창동 산림보호 펜스 설치비 3,000만원, 지방채 상환비 7억 2,250만원 이 모두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議長 金以煥 區廳長을 대신하여 盧張鐸 副區廳長께서 동의를 하여 주셨습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1年度 第1回 追加更正豫算(案)은 추가경정예산특별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기타 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議員 있음)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1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여기서 모두 마치고 폐회를 선포합니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11時35分 閉會)

○出席議員數 18人

金以煥	鄭泰淳	李憲九	吳錦南
千相旭	玄壽漢	安載弘	丁炳煥
劉燦鍾	李炯述	洪承台	金福同
朴鍾植	吳弼根	洪起瑞	李東奎
金正大	宣相善		

○出席關係公務員

副 區 廳 長	盧張鐸
行政管理局長	金賢植
財 務 局 長	董連浩
生活福祉局長	李炳滿
都市管理局長	河徹昇
建設交通局長	吳鍾錫
保 健 所 長	李星世